# 산업안전보건관리규 정

문서번호 HQ-SU-05AA-230630-KR 보안등급 대외공개 제정일자 2022년 03월 1일 개정일자 2023년 06월 30일 시행일자 2023년 06월 30일 주무부서

Workplace Team

## 제·개정이력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내용
2022.03.01.	제정	
2023.06.30.	개정	일부 조문 추가

##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1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
제3장	안전보건교육	4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5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6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8
제7장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9
제8장	위험성평가	10
제9장	보칙	12
부칙		13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사내도급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따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 4. 근로자 대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5.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6. 도급인: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7.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8.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9.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10.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11.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2.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안전보건계획)

- ①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후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5조 (재해예방 의무)

-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사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4)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 5)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 2. 안전보건조직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확인업무 수행
-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관련의무 이행사항 확인업무 수행

#### 3. 근로자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제6조 (안전보건조직)

- ① 회사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의 권한을 갖는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주관할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업무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 ③ 회사는 전 2항의 안전보건조직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④ 회사는 각 조직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며, 각 조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 10.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를 지휘・감독한다.

#### 제8조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3.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에 관한 업무
- 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 5.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
- 6. 안전보건교육 활동에 관한 업무
-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8.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업무
- 9.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10.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 11.산업안전보건관련 업무의 기록 보존
- 12.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 제10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각 조직내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의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도구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소속 조직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소속 조직이 일하는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참여
  -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2)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1조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수립 및 문서화)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차기 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주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전문화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의 교육은 외부 안전보건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제12조 (직무교육)

-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다음 각 호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 1.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2.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②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1. 교육 수료증
- 2.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14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제15조 (안전보건진단)

-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KRAFTON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제16조 (피난 및 대응훈련)

- ① 회사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피난 및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 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 제17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 외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반드시 함께 협의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18조(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한다.
- ②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④ 회사는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온라인 공지를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방법
  -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3. 기타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⑤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 ⑨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9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 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⑥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1. 건강진단기관
  - 2.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⑦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기관에 요청한 건강진단결과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⑧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① 회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제21조 (근골격계 질환예방)

-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근무하는 경우 적절한 온도ㆍ습도ㆍ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장시간 사무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VDT증후군,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그 외 거북목 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제24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서장,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고 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사고 대책본부나 사고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사고 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②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③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한다.
- ④ 재발방지대책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빠른 시일 내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안전보건업무 주관부서는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⑥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사항 등을 공지한다.

#### 제7장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 제2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 2.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4. 사내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 법 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6.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 8.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제27조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

- ① 회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② 회사는 건설공사의 발주 시, 원칙적으로 회사는 작업의 혼재가 없도록 하나의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되,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수 있다.

#### 제28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29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 조정
  - 4.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 5.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 제30조 (사업주간 협의체)

- ①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회사 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4. 작업장에서의 법 36조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제31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제8장 위험성평가

#### 제32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 (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 제35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산업재해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제3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3.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 및 일정
  - 6.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관련 문서
  -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 제9장 보칙

#### 제37조 (문서보존연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발생기록
  - 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제38조 (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준수)

- ① 회사의 모든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2.03.0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